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8.(일)

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의 집행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8. 매일경제는 「지방에 떼주는 미래기금 보조사업비, 남아도 반납 안한다」 기사에서,

○ “문제는 지방계정에서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 재원에 대한 규율이 느슨하다는 점이다. 중앙정부의 일반 국고보조금은 사업을 마친 뒤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.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유사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달렸다. 반면 미래대응기금 법안에는 이 같은 반환 원칙이나 별도의 자체 예산절감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.”라며

○ “하지만 지특회계에 이어 15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까지 더해지면서 막대한 지원 재원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은 **지역주도 성장**을 **뒷받침**하기 위하여 기금 내 **지방계정**을 **설치**하고 **지역산업 인프라 개선, 정주여건 개선** 등 **지역발전**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○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**지방정부의 신속한 투자 유도** 및 **원할한 집행 환경**을 **보장**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상 **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**의 **이월 특례, 보조금법 특례 규정**을 「**미래대응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안**」 내에 **차용**하였습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의 이월 및 보조금법 특례는 **지방계정**의 **모든 사업**이 아니라 **지자체 보조사업**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1690)
		담당자	서기관 정혁주 (ru2u3u4u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